강원지방기상청 종합감사 결과

【 2020. 2. 5.(수) / 감사담당관 】

1 감사실시 개요

□ 목적

○ 강원지방기상청의 예산집행, 인사운영, 예·특보 발표, 방재기상업무, 기상관측, 대국민서비스 등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기상청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관할 지역의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 근거

○「기상청 자체감사규정」(기상청 훈령 제961호, 2019. 12. 24.)

○ 2019년 자체감사 운영 기본 계획(감사담당관-1133, 2019. 3. 19.)

□ 대상 기관 / 범위

○ 강원지방기상청 / 최근 3년간(2016년 ~ 2019년)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9. 11. 18.(월) ~ 11. 29.(금), 10일간

- 세부사항 확인 및 보완: 2020. 1. 29.(수) ~ 2. 7.(금)

○ 감사인원: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 중점

○ 인사, 복무관리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 예·특보 발표 및 방재기상업무 적정성

○ 기상관측 및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추진 실태

○ 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관리 실태

○ 연구용역 관리 및 연구결과 활용 실태

2 감사 결과

□ 감사처분 총괄표

구 분	징계	경고	주 의	시 정	개선	통보	현지시정	계	모범사례
건수 (처분요구)	1 (개인 1명)	6 (개인 4명, 부서 1, 기관1)	-	-	-	4	1	12	1

□ 감사처분 목록

번호	제 목	처분종류	기관·부서
1	강원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운영 부적정	통보	○과
2	바람장 특성연구 용역 관련 회의비 관리 부적정	경고(1명)	◎과
3	명예기상관측관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부적정	통보	◎과
	공무직 등 채용절차 부적정	경고(기관) 경고(1명)	강원지방기상청 ○과
5	공무직 등 채용절차 부적정 및 관리 소홀	징계(1명)	○과
6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예산 재(재)배정 부적정	**적극행정면책 (주의→통보)**	囯국 田팀
7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집행 부적정	경고(2명)	○과
8	고층기상(레윈존데) 관측 수행인력 부적정	통보	◎과
9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예산집행 부적정	경고(부서)	☆과
10	수소 폭발사고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현지시정	○과

□ 모범사례

번호	제 목	모범부서
1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기상서비스 제공	기후서비스과

3 문제점 및 처분요구

① 강원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운영 부적정 ○과

【 문제점 】

○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에 국장·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로 정하고 있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여야 함

- 그런데, 「기상청 위임·전결규정」에 전결권자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훈령을 제정·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 결과,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청장이 승인한 훈령을 위반하여 자체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행정규칙을 운영하도록 정비 방안을 강구 **(통보)**

② 바람장 특성연구 용역 관련 회의비 관리 부적정 ◎과

【 문제점 】

○ 강원중부 산지·동해안지역의 고해상도 기상관측망 기반 복잡지형 내 바람장 특성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최종 보고회를 2차례 개최하였음

- 그런데 보고회 이후 수행기관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가 제공되는 자리에 과장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회의비를 총 1,142천 원을 집행하였음
- 그 결과, 용역계약을 발주한 부서에서 사용한 회의비를 별도로 집행하지 않고 용역비용에 포함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용역계약에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이 용역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용역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부서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 **(경고)**

③ 명예기상관측관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관리 부적정 ◎과

【 문제점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그런데, 명예기상관측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 여부, 서명도 없이 1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신청을 취소한 1명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
- 2017년도에 과다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현행화 미 실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도 없는 주소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개인정보 과다수집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명예기상관측관으로 지원한 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 방안 강구 **(통보)**

④ 공무직 등 채용절차 부적정 강원지방기상청 ○과

【 문제점 】

○ 무기계약·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체결 권한은 채용권자인 강원지방기상청장으로 되어있음

- 그런데, 2016년 12월~2019.9월까지 채용한 공무직 등 근로자 18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기관장의 결재를 받았고, 나머지는 과장 전결로 처리
-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신규 및 전환 채용 시 계약체결 보고 문서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건이 5건, 근로계약서만 작성 후 14일이 지나 문서로 처리한 건이 1건 있었음
- 그 결과, 채용권자가 아닌 과장 전결로 문서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절차를 소홀하게 관리하였음

※ 채용과정에서 채용 부조리와 채용된 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 조치 **(기관경고 / 개인경고)**

⑤ 공무직 등 채용절차 부적정 및 관리 소홀 ○과

【 문제점 】

○ 무기계약·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체결 권한은 소속기관장에게 있고, 채용업무는 정한 일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그런데, 2017년 12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의 합격자 발표 일자와 실제 합격자 발표 문서 시행 일자가 일치하지 않았고
-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전환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 문서도 시행하지 않았고, 2018년~2019년 채용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는 결재권자를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음
- 그 결과, 채용권자인 소속기관장의 근로계약 체결 문서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고, 전결권의 하향처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함

※ 채용과정에서 채용 부조리나 채용된 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경징계) **(징계요구)**

⑥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예산 재(재)배정 부적정 田팀

【 문제점 】

○ 지진대응을 목적으로 지방청에 배정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은 공사비 비목으로 재(재)배정을 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재(재)배정을 하였음

- 그 결과 지방청에서는 지진·지진해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공사를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목구조에 맞게 지방청에 재(재)배정하여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 **(적극행정면책 주의→통보)**

⑦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집행 부적정 ○과

【 문제점 】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의 시설변경(안)을 수립(당초 200백만 원 → 변경 105백만 원)하여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였고, 그 변경(안)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

- 그런데, 시설변경(안)과는 다르게 실제 공사는 당초 계획한 200백만 원 예산 규모로 추진하였고, 동일공사건을 주요사업의 공사비와 기본경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2건으로 진행하였음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시설변경(안) 및 실제 공사 현황

시설변경(안)		실제 공사
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105,000천원) ▪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나라장터) : 구매 및 설치(82,600천 원, 공사비) ▪ 수의계약: 전기공사(17,400천 원, 공사비) ▪ 수의계약: 설계(1,100천 원, 실시설계비) ▪ 수의계약: 감리(3,900천 원, 감리비) **예산 합계: 105백만 원**	⇒	**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102,500천 원)** ▪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나라장터) : 구매 및 설치(82,600천 원, 공사비) ▪ 수의계약: 전기공사(17,400천 원, 공사비) ▪ 수의계약: 설계(550천 원, 실시설계비) ▪ 수의계약: 감리(1,950천 원, 감리비) **②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추가(97,500천 원)** ▪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나라장터) : 구매 및 설치(95,000천 원, 시설장비유지비) ▪ 수의계약: 설계(550천 원, 실시설계비) ▪ 수의계약: 감리(1,950천 원, 감리비) **예산 합계: 200백만 원**

- 그 결과, 추가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계획도 없이 용역을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절차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으며, 예산의 비목별 지침과 과목 구분을 위반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정한 목적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을 철저히 해주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 **(경고)**

⑧ 고층기상(레윈존데) 관측 수행인력 부적정 ◎과

【 문제점 】

○ 고층기상관측 기본관서는 일 2회(9시, 21시) 고층관측을 수행하고, 필요 시 특별관측을 하고, 비양은 2인 1조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과는 평일에는 상일근자 1명이 일 2회 비양을 하고, 휴일에는 현업근무자 1명이 상일근자의 도움없이 일 2회 비양을 하고 있으며, 특별관측 시에는 상일근자 1명이 비양을 전담하고 있음

※ 강원청 ◎과는 고층관측 인력으로 2명이 배정되어 있고, 관측보조원은 없음

- 그 결과, 평일에는 상일근자 1명이, 휴일에는 현업근무자 1명이 일 2회 고층기상관측업무 전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및 관측자료 품질저하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고층기상관측 업무의 전문성·안정성과 고층관측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일근자와 현업근무자의 근무편성 조정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통보)**

⑨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예산집행 부적정 ☆과

【 문제점 】

○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수행하여 예산 비목별 사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맞춤형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특정업체와 거래 후 실제로는 다과를 구매하거나 과제 수행과 상관없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작성함

○ 그 결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예산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급 내역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 **(경고)**

⑩ 수소 폭발사고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현지시정) ○과

【 문제점 】

○ 2019. 5. 23. 18:21경 강원지방기상청 인근 강원테크노파크(직선거리 150~200m)에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였음

○ 위 폭발로 인해 강원지방기상청 청사의 유리창 파손 11건 등 총 25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복구를 위해 13,220천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 완료(2019.10.)

○ 그런데, 사고 발생에서부터 복구 시까지의 진행사항 및 집행내역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명문화하지 않아, 향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명문화 조치하도록 시정을 지시하였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수소 폭발사고에 따른 피해 현황 및 그간 조치사항을 내부결재 등 명문화하도록 시정 (**조치완료**, 2019.12.10.)

< 모범사례 >

①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기상서비스 제공 기후서비스과

【 사례내용 】

○ (**문제점**) 기존 태양광 예측정보만으로는 일반인은 발전량 예측이 어렵고, 주민들과 마찰 등으로 지자체는 행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우후죽순 늘어난 태양광발전설비로 산사태·난개발 등 언론의 부정적 견해 등이 상존하였음

○ (**개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토지정보, 개발행위 제한 등 행정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함

○ (**성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및 산업 수요에 맞춰 해당 토지의 예측발전량, 연간 발전수익 계산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태양광발전 의사결정을 지원